

I. 출제경향

세목	출제지문
국세기본법	1. 공시송달 2. 납세의무 소멸사유 3. 제2차 납세의무 4. 납세담보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6.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징수법	1. 관허사업의 제한과 출국금지 2. 압류재산의 매각
부가가치세법	1. 과세거래 2.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공급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2. 임의신고조정사항 3. 익금과 세무조정 4.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 평가
소득세법	1.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계산 2. 소득금액계산 특례 3. 세액공제 4.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재산가액

II. 총평

2017년 7급 세법 문제를 보면 역시나 평범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난이도에 있어서는 4월에 있었던 9급문제보다 훨씬 쉬었다고 볼수 있다. 평소에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 수준이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문제를 제외하고는 실수만 없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I. 기출문제해설

세 법

문1.「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답> ④ 공시송달의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그

리나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답> ④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따라서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은 국세청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한다.

문3. 법인세법령상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단, 세무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

②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답> ③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결산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강제 신고조정사항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임의신고조정사항이다. ①②④는 결산조조정사항임.

강제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외의 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나 신고조정이 가능한 항목)	• 일시상각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감가상각비(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	단순신고조정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법인) • 비상위험준비금(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 • 구상채권상각충당금(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

문4.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③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 ④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답> ③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로서의 가산세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결정,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문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답>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문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③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답> 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제3항).

문7.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만 뉘은 것은?

- ㄱ.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③

-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익금으로 세무조정할 필요없으나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실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8.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②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④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답>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시에는 공급으로 간주한다.

-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 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②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

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④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답> ④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따라서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10.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③

옳은 것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린 것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므로 비과세법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문11.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답> ③ 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는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문1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③ 채납자는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답> ④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1항).

문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답>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가산한다

문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가 아니다.

문15. 소득세법령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

입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합계액이 2,500만원(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임대료임)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답> ③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26조 제5항).

문16.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③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답>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수시 정상가액을 추가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따라서 실제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17.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인 6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	세액공제액
4천만 원 초과 또는 5,500만 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4천만 원 이하 또는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퇴직연금납입액과 합계액 한도
1억원(또는 1억2천만원) 이하	400만원초과시	400만원	700만원
1억원(또는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초과시	300만원	700만원

문18.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답>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따라서 등록된 유가증권은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19.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④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답> ④ 이월결손금 통산순서는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① 일반사업소득 및 주거용건물 임대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결손금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사업소득(주거용건물 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문20.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

야 한다.

- ③ 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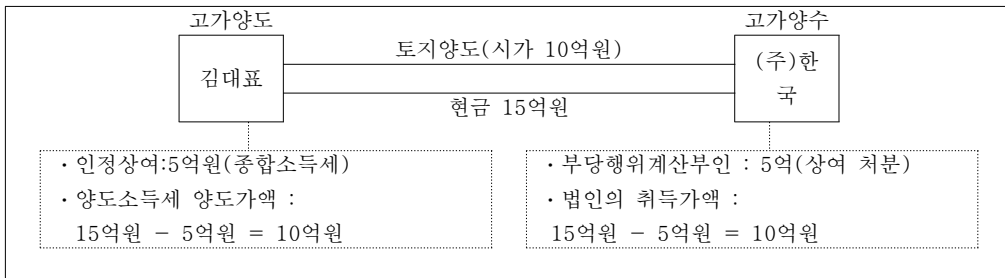
<답> ②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가 체납되었다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공시송달방법에 의

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정지나 취소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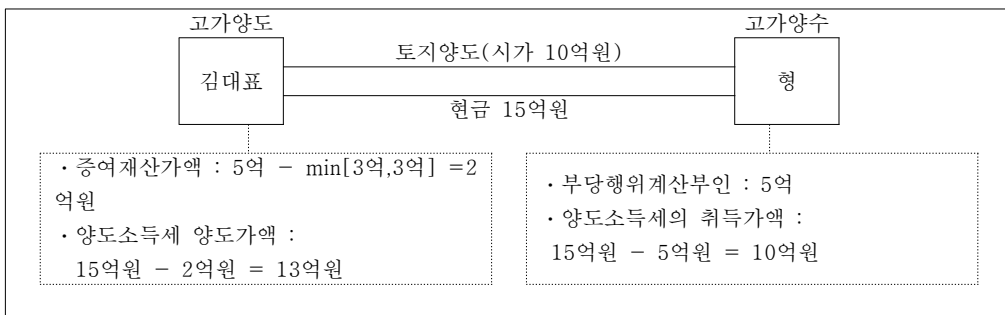
문6. 해설. 2018 김경섭 공무원세법 참조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양도가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1)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 (2) 특수관계법인의외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자산의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시 증여재산가액>

거래상대방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특수관계인 이외의자	시가와의 차액*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인 경우